

# 거창군농업회의소 출연(안)

의안 번호	2015-121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1. .  
제 출 자 : 거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거창농업발전과 농정 파트너로서 거창군과 거창농업인을 대표하는 협의기구인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출연개요

- 근거법령 : 「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」 제3조
- 대 상 : 거창군농업회의소(대표 김제열)
- 사 업 비 : 54백만원(출연 예정금액)

- 2016. 예산편성 요구사항 (단위:백만원)

사업기간	2015년 예산액	2016년 요구액*	재 원 별				
			계	국 비	도 비	군 비	기 타
2016년	54	54	54	-	-	54	-

- 사업내용 : 종사자 인건비, 소식지 발행, 농업정보 수집, 농업농촌 발전 심포지엄 개최 등 회의소 주관사업 운영비 지원

## 3. 부서의견

- 농업계의 보편·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위상제고를 위하여 농업회의소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4. 참고사항

- 출연 기관현황 : 붙임 1
- 관계 법령 : 붙임 2

[붙임 1]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## 거창군 농업회의소

설립근거	법률 :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조례 :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				전화번호 : 055-943-5547		
					홈페이지 : <a href="http://cafe.daum.net/943-5547">http://cafe.daum.net/943-5547</a>		
주요연혁	2012년 4월 30일 거창군농업회의소 설립 2012~2015년 거창군농업회의소 분과토론회 2013~2015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 공모사업 진행 2014~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진행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출연		
인원현황 (‘15.10.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3명		3명		명		
임원 (‘15.10.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회장	김제열	前 한농연 거창군연합회 회장		2015~2017 ( 3년 )		
	부회장	추연백	前 거창낙우회 회장		2015~2017 ( 3년 )		
	부회장	장병성	前 한우협회 거창군지부 사무국장		2015~2017 ( 3년 )		
	부회장	강찬홍	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지부장		2015~2017 ( 3년 )		
주요기능	농업인의 권익향상과 거창군 농업발전 추구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44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54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2	2013	2014	재무현황 (백만원) ‘14.12.31기준	자산	0
	예산액	75	99	135		부채	0
	지자체 지원액	40	54	54		자본	44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14.12.31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135			134		1	

##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
(제정) 2012.03.26 조례 제2074호

### 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설립 및 운영)

- ① 거창군 농업회의소(이하 “회의소”라 한다)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-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### 제3조(재원조성)

-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1. 회원의 회비
  2.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
  3.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
  4. 기관·단체·후원인 등의 출연금품
  5. 그 밖에 수익금 등
- ② 군수는 회의소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.

### 제4조(사업)

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
2.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

3.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농어업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제공·간행
5. 농어업에 관한 지도·상담·교육 참여
6.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·알선
7.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
8.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, 간담회, 전시회,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
9. 회의소의 발전에 관한 사항
10.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11.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
12.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# 제5조(수익사업)

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### 제6조(업무위탁 및 운영지원)

- 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# 제7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
-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8조(보고 및 검사 등)

군수는 회의소의 업무·회계·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9조(준용규정)

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(조례 제2074호 2012.3.26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